#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해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45

발의연월일: 2024. 6. 24.

발 의 자:이해민·황운하·김재원

김선민 • 박은정 • 서왕진

김준형 · 강경숙 · 민병덕

정춘생・신장식・조 국

차규근 의원(13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 제109조는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현행법은 일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든지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등을 열람 및 복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의 판결서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음.

그러나 미확정 형사판결서도 열람·복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모든 재판의 심리와 판결을 공개하도록 규정한 헌법 취지를 형사재판에 충실히 반영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참고로,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는 2020.9.24. 제8차회의에서 "헌법상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재판공개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확정 판결서의 공개를 확대할필요가 있고, 민사·행정·특허 미확정 판결서를 먼저 공개하여 시행경과를 살펴본 후 형사 미확정 판결서도 공개할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결한 바 있음.

이에 누구든지 확정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하여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열람 및 복사가 허용된 판결서는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59조의3제1항·제2항).

법률 제 호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의 제목 중 "확정 판결서등의"를 "판결서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를 "판결이 선고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의"를 "제5항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59조의3(확정 판결서등의 열람 제59조의3(판결서등의 열람 • 복 · 복사) ① 누구든지 판결이 사) ① -----판결이 선고 확정된 사건의 판결서 또는 그 된 사건의 판결서(확정되지 아 등본, 증거목록 또는 그 등본, 니한 사건에 대한 판결서를 포 그 밖에 검사나 피고인 또는 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서류 ·물건의 명칭·목록 또는 이 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판결 서등"이라 한다)를 보관하는 법원에서 해당 판결서등을 열 람 및 복사(인터넷, 그 밖의 전 산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전자 적 방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판결서등의 열람 및 복사를 제한할 수 있 다. 1. ~ 5. (생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열람 및 복사 가 제한되지 아니한 판결서(일 부만 제한된 경우도 포함한다) 는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바

2	(생	략)
_	\ U	1 /

③ 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한 법원사무관등이나 그 밖의 법원공무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아니면 제1항에 따른 열람 및복사와 관련하여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④ (생 략)

- ⑤ 제4항의 불복신청에 대하여는 제417조 및 제418조를 준용한다.
- ⑥ (생략)

에 따라 판결서에 기재된 문자
열 또는 숫자열이 검색어로 기
능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
<u>다.</u>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u>④</u> 제3항에
<u>.</u>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u>⑥</u> 제5항의
<u>.</u>
⑦ (현행 제6항과 같음)